

부양의무자 소득 · 재산 참고자료

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
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8호, 제10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1호)

$$\text{✦ 소득인정액} = \text{소득평가액} + \text{재산의 소득환산액}$$

$$\text{- 소득평가액} = \text{실제소득} - \text{가구특성별 지출비용} - \text{근로소득공제}$$

$$\text{- 재산의 소득환산액} = (\text{재산} - \text{기본재산액} - \text{부채}) \times \text{소득환산율}$$

□ 기본재산액 공제방식

- 대도시 : 주거용 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 순으로 22,800만원을 공제
- 중소도시 : 주거용 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 순으로 13,600만원을 공제
- 농어촌 : 주거용 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 순으로 10,150만원을 공제

□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

○ 주거용 재산

-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(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)

* 토지·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

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구분	주거용 재산	일반재산	금융재산	자동차
부양의무자	월 1.04%		월 4.17%	